[별표 1]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1. 재무제표의 승인

1.1.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및 독립성

1.1.1) 재무제표의 승인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1.1.2) 피감사회사가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외에 경영자문서비스 등을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한다.

1.2 배당정책

1.2.1) 회사의 적정 배당정책에 의한 배당에 찬성 투표한다. 다만 배당과 관련하여 주주서한, 경영진 면담 등 주주활동을 진행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은 경우, 또는 배당금 지급수준이 회사의 이익규모 및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주주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과소하거나 과다한 경우 반대 투표한다.

1.2.2) 중간 또는 분기 배당을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1.2.3) 현금배당 이외에 현물배당이 가능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배당으로 지급할 현물의 시장성,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주주 권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1.2.4)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결정하게 하는 안에 대해 주주 권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배당을 회사 성과와 적절히 연계하는 등 배당 원칙과 기준, 절차 등을 명시한 배당정책을 마련하여 공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 정관의 변경

2.1. 회사명칭의 변경

2.1.1) 회사명 변경이 인지도 하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2.2.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2.2.1) 사업목적의 추가·변경 안에 대해 기존의 사업목적과 연관성이 없거나 주주가치의 훼손 또는 사회적 책임 회피 등이 예상되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다만, 신규수익 창출 등 회사의 미래 전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2.3. 회계연도 변경

2.3.1) 잦은 회계연도 변경 등으로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한 찬성한다

2.4 본사이전

2.4.1) 주주들에게 이로울 수 있는 본사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2.5. 주주총회 결의요건 변경

2.5.1) 주주총회의 결의요건을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찬성할 수 있다.

2.5.2) 특히 초다수결의 등 주주총회 결의요건 강화에 반대한다.

2.6. 주주 총회

2.6.1) 주주총회 소집공고기간을 늘리는 안에 찬성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줄이는 안에 반대한다.

2.6.2) 주주의 직접 참석 없이 전적으로 전자수단에 의해서만 개최하는 주주총회 개최 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2.6.3) 주주의 서면투표 또는 전자투표를 허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7. 의결주체의 변경

2.7.1) 정당한 사유 없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변경하는 안에 반대한다

2.8. 소수주주권 보호

2.8.1) 소수주주권 행사가 용이하도록 주식보유기간이나 주식보유비율을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강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2.9. 안건 상정

2.9.1) 이익배당, 정관의 변경, 이사·감사의 선임,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등 주주총회 주요 안건 세부사항이 주주총회 전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 반대 투표한다.

2.9.2) 일괄상정한 안에 대해서는 개별 안건 전부에 대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10. 의결권 대리 행사

2.10.1) 대리인자격을 주주로 제한하는 안에 반대하고, 주주 이외의 자에게도 대리인 자격을 인정하는 안에 찬성한다.

2.11. 주주명부 폐쇄기간 변경

2.11.1) 주주명부 폐쇄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대해 찬성하고,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안에 대해서는 연장이 필요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12. 이사회의 규모

2.12.1) 이사회 내 위원회의 활동을 제약할 만큼 이사의 숫자를 제한하거나, 개별 이사의 영향력을 무력화할 정도로 많은 이사를 두려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2.13. 사외이사

2.13.1) 이사회의 사외이사 비중을 높이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낮추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13.2)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충족여부를 매년 확인 및 검토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13.3) 사외이사의 임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14. 이사·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2.14.1) 이사·사외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대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전제로 찬성 투표한다.

- 책임 한도의 기준이 되는 "최근 1년간 보수액"의 개념을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제시할 것
- 책임 감면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실제 책임감면을 위해서는 주주총회 결의를 최종적으로 거치도록 할 것
- 상법 제400조 제2항 단서 규정(경업・자기거래・회사기회 유용에 해당하는 경우 및 고의 또는 중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의해 책임감면이 배제되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할 것

2.14.2)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하에 소신 있는 이사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무책임한 경영판단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책임보험의 보험료를 기업이 부담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15.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의 분리

2.15.1)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CEO) 직책 분리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15.2) 고위 경영자[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등]가 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안에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15.3) 이사회 의장과 최고경영자의 직책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외이사 회의를 주재하고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lead director)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16. 시차 임기제

2.16.1)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서는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집중투표 무력화 또는 경영권 방어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등 합리적인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반대 투표하고, 시차임기제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2.17. 이사후보에 대한 투표 방식

2.17.1) 이사후보 각자에 개별적으로 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이사후보를 묶어 일괄투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2.18. 이사의 집중투표제

2.18.1)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안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하고, 집중투표제 배제조항을 삭제하는 안에는 찬성 투표한다.

2.19. 이사회 내 위원회

2.19.1) 이사회 내 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독립성을 저해할 특별한 우려가 없다면 찬성하고, 해당 위원회를 폐지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한다.

2.19.2) 이사회 내 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성원의 자격, 책임, 의사결정 절차, 자체 평가 및 보고의무 등 상세한 위원회규정을 마련하고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19.3) 사외이사 구성 비율이 법정되지 않은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경우에도 위원 중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하고, 기존의 사외이사 비율을 축소하는 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2.20. 이사·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2.20.1)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0.2)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사외이사의 비중을 높이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0.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0.4)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1. 보상위원회의 설치, 구성

2.21.1) 이사회 내에 이사보수 결정 과정의 객관성,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1.2) 보상위원회의 구성원을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1.3) 대표이사나 최대주주가 보상위원회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한다.

2.21.4) 이사에 대한 보상체계 등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 보상에 관한 총계 정보(고정 및 변동 보상액의 구분)
- 변동보상 금액 및 형태(현금, 주식, 주식연계상품, 기타 등)
- 현금 및 주식 보상의 배분 기준
- 성과와 보상의 연계성
- 성과측정 및 리스크 조정 기준
- 이연 및 지급확정 기준
- 이연보상액(당해 회계연도 지급액)
- 그 밖에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정 보상에 관한 정보

2.22. 내부거래위원회

2.22.1) 계열회사 및 특수관계인 등과의 거래가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이사회 내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2.2) 내부거래위원회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2.3) 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주주총회 승인 사항으로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3. 임원 보수

2.23.1) 이사회가 제시한 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2.23.2) 보수한도 수준이 경영성과 등에 비추어 과다한 경우에는 반대한다. 다만, 개별등기임원에 대한 보상 내역과 보상 체계 등 객관적으로 보상 수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사안별로 검토한다.

2.24. 성과연동 보상제도

2.24.1) 현재 급여체계에 성과목표를 추가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4.2) 임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은 동종 업계 성과, 시장 상황 등과 비교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4.3) 임원의 장기성과연동형 주식 보상 부여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만족하는 경우 찬성 투표한다.

-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과 목표의 제시
- 매도 제한 기간의 적절한 설정
- 합리적인 부여 방법 및 지급 기준의 제시
- 총 발행주식 대비 주식 보상 규모의 적절한 설정

2.24.4) 임원이 주식과 연계한 보상의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파생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4.5) 임원에 대한 성과연동보상 중 60%이상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이연 지급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4.6) 임원의 성과연동형 보상이 분식회계,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왜곡된 성과기준에 근거하여 지급된 경우 이를 환수하는 정책을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2.24.7) 사외이사에게 급여 등 보상의 일부를 주식 또는 주식매수선택권 등 주가와 연계된 보상으로 부여하는 경우 퇴직 전에 매도 또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5. 이사 및 경영진 보상

2.25.1) 경영진의 업무를 평가하여 재무적 업적 뿐 아니라 좋은 노사관계, 제품의 안전성, 그리고 환경문제 등 전반에 걸친 경영자의 업적과 보수를 연계시키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5.2) 성과에 연계되지 않는 경영진 보상체계에 반대 투표한다.

2.26. 퇴직보상

2.26.1) 이사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안에 대해서는 과거 경영실적, 회사의 재무상황, 퇴직사유 등을 고려하여 과도한 경우에 반대 투표한다.

2.26.2) 사외이사의 경우 퇴직 혜택을 부여하는 안에 반대 투표한다.

2.27.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2.27.1) 경영진에 대한 황금낙하산 계약이 주주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되고, 수혜자의 이해 충돌을 야기하지 않으며, 제시된 액수가 기업의 다른 임직원들과 비교해 적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황금낙하산 조항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2.27.2) 경영진의 해직 또는 퇴직시 제공되는 보상금에 대해 주주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2.28. 우리사주제도

2.28.1) 우리사주조합을 결성하거나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안에 일반적으로 찬성 투표한다.

2.29. 자본구조

2.29.1) 보통주의 액면가를 감액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7.1.1을 준용한다.

2.29.2)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3. 이사,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해임)

3.1 이사의 선임

3.1.1) 일반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거나, 회사나 이사들의 장기성과가 불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면 독립적인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들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1.2) 아래의 이사 후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 법규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에 준하는 행정적 제재를 받은 경우를 포함)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주주제안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그 적절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 이사회나 이사회의 주요 위원회에 3/4 이상 출석을 하지 못한 경우
- 전체 주주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주주 집단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 의도적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왜곡하거나 감춘 증거가 있는 경우
- 과도한 겸임으로 인해 이사로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 그 밖에 회사 가치의 훼손,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경우

3.1.3) 이사의 임기 구조를 변경하는 안에 대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보다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각 이사의 임기를 다르게 하여 전체 이사회의 권한을 약화시키거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3.2. 이사회 평가

3.2.1) 정기적으로 이사회를 평가하고 이사회 평가 기준과 평가 결과를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사업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3.3. 사외이사의 선임

3.3.1) 사외이사 선임시 관련법령 및 이사의 선임 규정을 준용하되 아래의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 당해 회사 또는 계열회사(비영리법인 포함)의 전직 임직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혹은 그 특수관계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특수관계인이었던 자
- 회사(현재 및 과거)의 외부감사회사, 그 계열법인의 피고용인 및 관계자로서 감사 또는 관계업무를 수행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최근 3년 이내에 회사(최대주주, 계열회사 포함)와 중요한 거래관계, 협력관계 등 이해관계가 있었던 개인 혹은 법인(법률사무소 포함)의 임직원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임직원이었던 자
- 당해 회사에서 6년 이상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거나 당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9년 이상인 자
-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특수관계인
- 그 밖에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등 회사와의 이해관계로 인해 사외이사로서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판단되는 자

3.3.2) 해당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시 명백한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의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또한 적정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지 않은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반대 투표한다.

3.4. 대표이사

3.4.1) 대표이사 후보에 대해서는 전문성, 경험과 평판, 윤리성, 겸임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3.4.2) 대표이사의 3기 이상 연임시 이사회 결의 요건을 강화하거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전환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4.3) 경영승계 담당조직의 구성・운영・권한・책임, 조직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자체평가, 고위 경영진에 대한 성과평가, 비상시 혹은 대표이사 은퇴 시 경영승계 절차, 임원 및 후보자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경영승계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5. 집행임원

3.5.1) 상법상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5.2) 집행임원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집행임원의 권한과 책임 등을 포함한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공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6 감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3.6.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지식과 경륜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거나 경영진과 독립적이지 못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3.6.2) 다음 결격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 후보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 이사 및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외부감사인에게 지급한 용역보수 중 회계감사 이외의 경영 컨설팅 등 비감사 용역 보수가 감사 보수를 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에 감사위원회 위원이나 감사로 재직하는 동안 그 재직 중인 회사가 적정 이외의 외부감사 의견을 받거나 외부감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적·사법적 제재를 받은 경우

3.6.3)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사외이사 자격(결격)요건을 준용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6.4)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나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또는 구성과 기능에서 그에 상응하는 위원회가 감사위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6.5) 이사 선임 시 법령 또는 정관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와 다른 이사를 분리하여 선출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3.7. 감사위원회

3.7.1)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는 안에 찬성한다.

3.8. 임기의 단축 또는 연장

3.8.1)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단축하거나 연장하는 안에 반대한다

4. 이사 및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4.1 이사 및 감사 보수 한도

4.1.1) 이사 및 감사의 보수 한도 안에 대해서는 보수 한도 또는 보수 금액 수준이 회사 및 이사회의 규모, 경영 성과 등을 고려하여 과도하지 않다면 찬성 투표한다.

4.1.2) 감사의 보수 한도 수준이 감사가 충실하게 업무를 이행할 유인을 훼손시킬 만큼 과소한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5.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1.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5.1.1)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아래의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찬성한다.

- 시장요인을 고려하는 경우
- 특정 경영성과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연간 주식연계보상 물량이 총 발행주식수의 3% 미만인 경우

5.1.2) 사후에 스톡옵션 행사가격을 조정하거나 기발행 스톡옵션을 취소하고 행사가격을 조정하여 새로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안에 대해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단 증자 및 소각 등 주식가치의 변동 시 기존 스톡옵션의 실질가치 및 기존주주의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5.1.3) 스톡옵션의 행사기간을 단축하는 안에 반대 투표한다.

5.2. 주식보상제도

5.2.1) 경영진에게 제공되는 현금보수 중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5.2.2) 주식보상제도에 의해 부여된 주식을 2년 이상의 일정기간 동안 매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5.3. 자사주구매를 위한 회사의 대출

5.3.1) 임직원들에게 자사주 매수를 위해 자금을 대부해주는 안에 반대한다.

6. 합병 및 영업양수도 등

6.1.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기업구조조정

6.1.1) 재무적, 사회적, 환경적 위험 또는 책임을 수반하는 인수합병, 구조조정 안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6.1.2)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가 아닌 단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 실행되는 인적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6.2. 기업인수 및 인수방어

6.2.1) 인수합병 자체, 혹은 이를 위한 자본금의 증가나 신주발행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 결합될 회사의 전망, 재무 및 영업상의 이점
- 합병대가의 적정성
- 시장 반응
- 협상절차의 적정성
-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 자본구조의 변화
- 이해상충

6.2.2) 기업의 핵심적 사업부분을 매각해 인수 매력을 떨어뜨리는 왕관보석 방어전략(Crown Jewel Defenses)이 주주들에게 적정한 가치를 가져다주지 않는 한 반대 투표한다.

6.2.3) 그린메일(Greenmail)은 인수대상기업이 인수를 시도하는 주주로부터 그 주주가 이미 인수한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프리미엄을 의미한다. 그린메일에 반대하는 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 투표하며, 그린메일의 제공에 반대 투표한다.

6.3. 위임장 대결

6.3.1) 위임장 대결시 현직 경영자를 지지할지 혹은 그에 대한 도전자를 지지할지는 다음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 경쟁자와 비교한 경영실적
-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사회가 취한 조치
- 주주제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 현경영자와 도전자간의 기업개선이나 기업지배전략상의 차이
- 도전자에 대한 찬성투표가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에 미칠 영향
- 이사후보의 경험과 능력
- 현경영자의 경영고착화(entrenchment) 정도
- 기업의 인수방어전략의 적정성

6.3.2) 위임장 대결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는 안에 대하여 사안별로 검토하여 투표한다.

6.4 회사분할

6.4.1) 회사분할에 대한 안은 분할방식, 가치평가, 공정성, 이해상충, 경영자의 인센티브, 기업지배구조의 변화, 자본구조상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6.5. 자산의 매수 및 매각

6.5.1) 자산 매수 안에 대해 매수가격, 공정성,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사업상 시너지,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6.5.2) 자산 매각 안에 대해 대차대조표에 대한 영향, 재무 및 영업상의 기대효과, 자금의 예상 사용처, 거래의 공정성,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6.6. 영업양수도 등

6.6.1) 주주가치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되는 영업양수도에 대해 반대 투표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반대 또는 기권할 수 있다.

6.7. 조인트벤처

6.7.1) 조인트벤처를 설립하려는 안에 대해서 제공하려는 자산의 비중, 소유지분의 비중, 재무 및 전략적 혜택,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6.8. 신주인수권

6.8.1)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배제·제한의 근거, 목적, 범위, 기준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 투표한다.

6.8.2) 신주를 제3자에 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 규모 및 가격, 발행 대상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7. 자본구조의 변경

7.1. 자본금 감소

7.1.1) 자본금 감소의 안에 대해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대 투표한다.

- 기업회생, 자본조달, 구조조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장폐지를 피하기 위해 시행하는 경우

-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유상감자인 경우

-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으로 주주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경우

7.2. 주식병합 및 주식분할

7.2.1)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증가(감소)하는 주식분할(주식병합)에 대하여 찬성한다.

7.2.2) 발행주식수가 비례적으로 감소하지 않는 주식병합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검토한다.

7.2.3) 상장폐지를 피하려는 주식병합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7.3. 자본금의 증가

7.3.1) 정관상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증가시키는 안에 대해 자본금의 증가 등 목적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7.3.2) 회사의 경영자들이 자본금을 증가시켜 외부의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한 경우에는 반대 투표한다.

7.3.3) 자본금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회사의 주식이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거나 회사가 계속적으로 영업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찬성 투표한다.

7.4. 신주발행 및 자사주 매각

7.4.1) 회사의 경영자들이 발행주식수를 증가시키거나 보유중인 자사주를 매각하여 적대적 기업인수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명백할 경우에는 이의 승인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7.5. 실권주(失權株)의 배정

7.5.1) 실권주를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 사외이사 등에 배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에 찬성 투표한다.

7.6. 자기주식

7.6.1) 자기주식 취득안에 대해서는 회사의 이익규모, 재무상황, 과거 취득의 적정성, 경영권 관련 사항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가 제시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7.6.2) 모든 주주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공개시장에서의 자기주식 매입을 제도화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 투표한다.

7.6.3) 만약 과거에 회사가 권한을 남용한 증거가 있거나 상법 제341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기주식 매입 안에 반대 투표한다.

7.6.4) 경영권 보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를 부당하게 훼손하지 않는다는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7.6.5) 회사가 새로운 사업투자가 필요한 경우에 실행하는 자기주식 처분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7.6.6) 자기주식의 취득·처분의 결과를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7.6.7) 주주평등의 원칙을 훼손하거나 경영권 방어에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등의 소지가 없도록 자기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등을 제한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7.6.8) 자기주식의 처분을 주주총회의 승인에 의하도록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8.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8.1.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의 변경

8.1.1) 주주총회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를 변경하려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8.1.2) 정기주주총회나 임시주주총회를 연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경영자에게 부여하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투표한다.

8.2. 지주회사의 설립

8.2.1) 지주회사의 설립에 관한 안은 설립목적, 기업지배구조와 경영권에 미치는 영향, 자본구조 변화 및 재무상황,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에 찬성 투표한다.

8.3.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상장폐지)

8.3.1) 회사 주식의 자진 상장폐지를 결의하는 안에 대해서는 아래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 공식적인 이의신청 절차 등 소액주주의 보호절차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 자진 상장폐지의 절차 및 과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공개매수 가격 등 기존 주주에 대한 보상이 불합리하거나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8.3.2) 비공개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주식거래가 주주들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이 확실한 경우 찬성 투표한다.

8.4. 청산

8.4.1) 청산에 대한 안은 관련 요소들을 검토한 후에 사안별로 투표하되, 청산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회사가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찬성 투표한다.

8.5. 자본구조개편

8.5.1) 자본구조개편은 자본구조의 단순화여부, 유동성의 증가여부, 전환조건의 공정성여부, 의결권 및 배당에 대한 영향, 자본구조개편의 사유, 이해상충여부, 기타 다른 대안의 존재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8.6. 종류주식

8.6.1) 종류주식 발행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종류주식의 의결권, 배당금, 전환권 및 기타 권리를 명백하게 하고 그 밖의 조건들이 합리적이면 찬성한다. 다만, 종류주식 발

행이 기존 주주의 과다한 권리 희석, 적대적 기업인수를 방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반대한다.

8.7. 증권의 전환

8.7.1) 증권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전환비율, 재무적 사항, 경영권 문제,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8.8. 채무재조정

8.8.1)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보통주 혹은 종류주식을 새롭게 발행하려는 안에 대하여는 기존 주주의 권리 희석, 제안 조건, 경영권관련 쟁점,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사안별로 투표한다.

8.9. 사채

8.9.1)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주식연계사채 또는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고 기존 주주권의 희석 정도, 전환가격 및 신주인수가액, 재무상황, 경영권 관련 사항, 이해상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8.9.2) 특정주주 및 제3자 배정 주식연계채권 발행 안에 대해서는 발행목적, 발행규모 등이 적정하고, 이해상충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시장반응도 부정적이지 않은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8.9.3) 채무재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을 통한 주식연계채권 발행을 확대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8.9.4)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정관에 정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 찬성 투표한다.

8.9.5)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 수가 50%이상 증가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일반적으로 반대 투표한다.

8.9.6) 주주들의 우선인수권이 없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여 채권의 전환이나

신주인수권의 행사에 따라 회사의 발행주식수가 20% 이상 증가될 수 있다면 그러한 채권의 발행에 반대 투표한다.

8.9.7) 채무재조정의 일환으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안에 대해서는 발행 규모가 크지 않고, 이익배당참가의 조건 및 내용 등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는 경우에 한해 찬성 투표한다.

8.10. 주주 제안

8.10.1)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판단하되 제안의 취지, 타당성 및 위법성, 중대한 리스크의 유무, 이해상충 여부, 회사의 대응 수준,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 투표한다

8.10.2) 제안의 배경이 되는 이슈와 관련된 회사의 관행에 대하여 중대한 논란 또는 소송의 제기 여부, 회사가 벌금·제재 등을 부과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반대 투표한다.

8.10.3)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장기적인 주주가치 제고에 더 부합하는 안건에 찬성 투표한다.

8.10.4) ESG 지속 가능성을 강화시키는 주주제안에 대해서는 주주가치, 책임투자,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부정적인 측면이 크지 않은 경우 찬성 투표한다.